

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대상 확대와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,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주택법 인용조문 정비(안 제21조)
-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대상 확대(안 제22조)
- 업무대행건축사 모집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3조제1항)
-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·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3조제2항)
-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3조제5항)
-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와 지정대장 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3조제9항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건축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대상 확대와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,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재정 전 공사감리자를 건축사에서 개정 후에는 건축사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개정 등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